

## 개선대상 및 적용 예외 대상 포장재



### 1 개선대상

사용금지 대상 포장재	비고
PVC재질의 포장재 (폴리염화비닐리덴 포함)	PVC재질을 사용하여 첩합(래미네이션), 수축포장 또는 도포(코팅)한 포장재 (제품의 용기 등이 붙이는 표지를 포함)를 포함
유색 PET병	먹는샘물 및 음료류에 한함
열알칼리성 수용액 분리되지 않는 접(접)착제가 사용된 PET병	

### 2 사용금지 적용 예외(사용가능) 대상

「포장재의 재질·구조 기준」고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포장재

### 3 시행일 : '19.12.25.

※ 별도의 계도기간 없음

### 4 개선 및 중단명령(환경부)

의무생산자가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를 제조·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선명령 대상

→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내 미개선 시 제조·수입·판매 중단명령 혹은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



### 5 관련규정

- 가.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, 제9조의3, 제36조 및 제41조
- 나.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및 규칙 제3조의3 및 제3조의4
- 다.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환경부 예규 제667호, 2020.02.06)
- 라. 「포장재 재질·구조 기준」(환경부 고시 제2019-244호, 2019.12.24.)
- 마. 「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」(환경부 고시 제2019-265호, 2019.12.30.)
- 바. 「포장재 재질·구조 등급표시 기준」(환경부 고시 제2020-39호, 2020.02.17.)
- 사.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의 이해」(환경부, 2020.02.14.)

### 6 한국환경공단 지역별 연락처

구분	전화	관할구역
수도권동부 지역본부	(031) 590-0654, 0656	포천, 동두천, 의정부, 가평, 구리, 남양주, 하남, 양평, 성남, 광주, 여주, 용인, 이천, 안양, 과천, 군포, 의왕, 수원, 오산, 평택, 안성
수도권서부 지역본부	(02) 3153-0570~7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(연천, 파주, 양주, 고양, 김포, 부천, 광명, 시흥, 안산, 화성)
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	(051) 366-3770~1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충청권 지역본부	(042) 939-2336-9, 43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세종시
호남권 지역본부	(062) 949-0314, 0747~8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
대구경북 지역본부	(053) 590-7545, 1, 9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
강원지사	(033) 240-9542, 7	강원도
전북지사	(063) 279-0835-8	전라북도
충북지사	(043) 219-6442, 4	충청북도
제주지사	(064) 725-6548	제주특별자치도



#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



##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란?



포장재 재질·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·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

[관련근거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'18.12.24. 제정·공포, '19.12.25. 시행]

### 1 시행배경

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지속적으로 생산·유통되어 폐기물 회수·선별·재활용 과정으로 유입



재활용률 저하·재활용비용 증가·재활용제품 품질 저하·유해물질 발생 등 문제 유발



이에,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질·구조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재질·구조 개선을 유도

### 2 평가제도 개요

대상	자원재활용법 제16조1항에 따른 <b>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</b>
평가품목	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 등 4대 포장재
평가항목	몸체/라벨 등에 대해 단일재질 및 단일색상 여부, 라벨의 분리 용이성 등 재활용용이성을 평가
평가등급	4개 등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“재활용 최우수”, “재활용 우수”, “재활용 보통”, “재활용 어려움”</li> </ul>
미이행시 조치사항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</li> <li>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</li> </ul>

### 3 평가대상 포장재

시행령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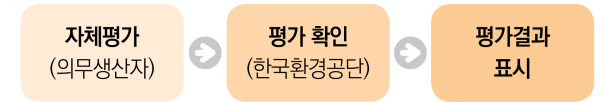
구분	대상 제품	포장재 예시
종이팩	음식료품 농·수·축산물 세제류	
유리병	화장품 및 애완용품용 삼푸·린스 의약품 및 의약품 부탄가스 제품 의복류	
금속캔 (알루미늄,철)	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·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(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)	
합성수지 재질	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	
	필름·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	
	1회용 봉투·쇼핑백	

\* 법 시행 전 제조·수입된 제품(제조일자 기준)은 평가 비대상

### 계도기간

법 시행 후 **9개월간('19.12.25~'20.9.24) 계도기간 운영**  
 ※ 계도기간 내 **포장재 재질·구조 신청을 하지 않은 제품**을 출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

##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



### 1 자체평가

포장재 재질·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 방법에 따라 재질·구조 단위로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(단,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은 증빙서류 제출 예외)

\*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모두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대상  
 \*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(www.iepr.or.kr)에서 신청 가능

### 2 평가 확인

- 자체평가 등급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**평가확인서 발급**
- 증빙서류 검토 결과 평가등급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 통보(10일 이내 보완)

### 3 평가 결과 표시



\* 단, 평가결과 표시 예외 포장재(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, 고시 제5호)는 제외

**제도 관련 FAQ**  
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(www.iepr.or.kr)  
 [ 제도소개 →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→ 제도관련 FAQ ]  
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